

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제4공단에 편입된 양포동사무소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
- 사적 제336호인 낙산리 고분군 보존관리계획 사업 예정부지 매입
-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인접 사유지와 상응한 시유지 교환

3. 주요내용

【취득 및 처분재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위 치	필지수	면적(m ²)	추정가액	사 유
토지매입 건물신축	4공 단내 "	1 1동 (자매지상)	2,361(714평) 연건평 990 (300평)	344,000 1,600,000	양포동 동사무소매입 양포동 사무소 신축
토지매입	해평 낙산리	5	4,536(1,372평)	43,456	고분군 보존사업예정부지
토지매입	원평동	1	1,178(356평)	41,936	노인복지회관부지 취득(교환취득)
토지매각	원평동	2	787(238평)	47,455	매각(교환매각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시행령 제84조, 제101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취득처분의 경우 1억이상 토지의 면적은 1천㎡이상으로 하고 있음.
-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4공단 편입 양포동사무소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계획, 해평 낙산리 고분군 보존관리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, 원평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인접 사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임.
- 다만, 재정법 시행령에서 교환에 대해서는 공용,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